

#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최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98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  
발 의 자 : 최 선, 이은주, 이영실, 문병훈,  
박상구, 송재혁, 고병국, 김제리,  
한기영, 전병주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행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는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협약내용을 공증하도록 되어 있으나, 민간위탁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‘공문서’로 ‘진정성립이 추정’되어 공증이 불필요함.
- 감사원 감사(’20.5.) 시 민간위탁조례의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을 개정 지도 하라는 권고가 있었고,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조례의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라는 지침을 시달함(’20.8.).
- 조례상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공증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음

## 2. 주요골자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제1항의 민간위탁협약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함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협약체결 등)</p> <p>① <u>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 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11조(협약체결 등)</p> <p>① <u>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 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